[보 고 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구미 제조업체 의견 조사

2021. 2

구미상공회의소

Ⅰ 조사개요

▌조사목적

○ 본 조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구미 제조업체의 의견 및 주요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정책 개선 시 참고자료로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조사설계

○ 조사기간 : 2021. 1. 13 ~ 1. 22

○ 조사기관 : 구미상공회의소

○ 조사방법 : 팩스, 이메일 등을 활용한 조사표 취합, 통계

○ 조사대상 : 구미지역 제조업체 700여개사

○ 응답업체 : 53개사

▌조사내용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의견 (법 관련 의견, 영향, 효과 등)

○ 중대재해 예방 관련 정부 정책 현황 (지원수준에 대한 의견, 지원 과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보완책 및 개선방안

Ⅱ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위험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의무를 위반해 사망·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때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해당 법인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수위를 명시함

- 안전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 (자연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
  - (법인)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 노동자가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릴 경우
  - (자연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법인) 10억 원 이하의 벌금

○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1월 26일 공포됨에 따라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1년 유예를 거쳐 2022년부터 시행,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부터 시행할 예정임.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법인을 법규 의무 준수 대상자로 하고 사업주의 경우 안전보건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을 하는 데 반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법인과 별도로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데서 차이가 있음.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비교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의무주체	사업주(법인사업주+개인사업주)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등 *경영책임자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보호대상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법정 특고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적용범위	전 사업장 적용 (다만, 안전보건관리체제는 50인 이상 적용)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후 시행)
재해정의	◆ 중대재해: 산업재해 중 ①사망자 1명 이상 ②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③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사망·부상·질병	◆ 중대산업재해: 산안법상 산업재해 중 ①사망자 1명 이상 ②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③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내 3명 이상
의무내용	◆ 사업주의 **안전조치** ①프레스·공작기계 등 위험기계나 폭발성 물질 등 위험물질 사용시 ②굴착·발파 등 위험한 작업시 ③추락하거나 붕괴할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시 ◆ 사업주의 **보건조치** ①유해가스나 병원체 등 위험물질 ②신체에 부담을 주는 등 위험한 작업 ③환기·청결 등 적정기준 유지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680개 조문**)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①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②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③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①·④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처벌수준	◆ 자연인 (사망)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안전·보건조치위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법인 (사망) 10억원 이하 벌금 (안전·보건조치위반) 5천만원 이하 벌금	◆ 자연인 (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부상·질병)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법인 (사망)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 10억원 이하 벌금

Ⅲ 설문조사 결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관련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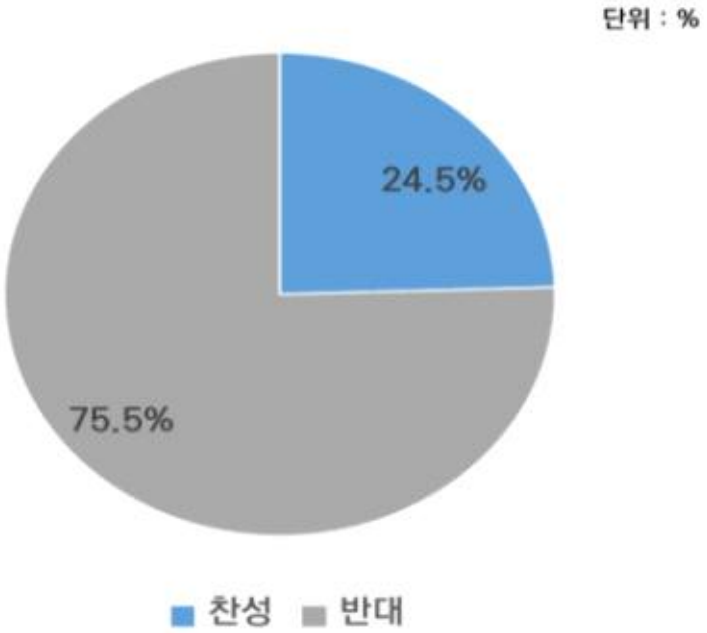

○ 응답업체 53개사 중 75.5%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관련해서 반대한다고 밝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벌수준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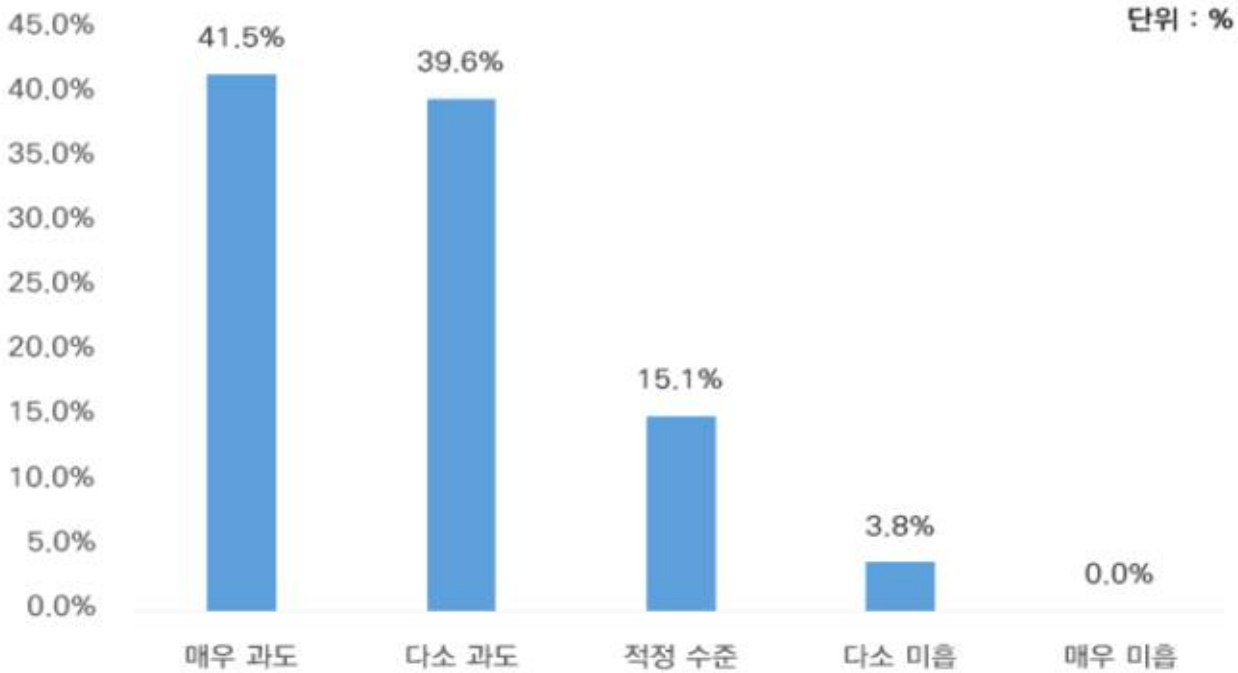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해서 처벌수준에 대하여 과도하다는 입장이 81.1%로 많았으며, 적정수준 15.1%, 다소 미흡은 3.8%에 불과함.

▌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로 중대재해 예방 효과 관련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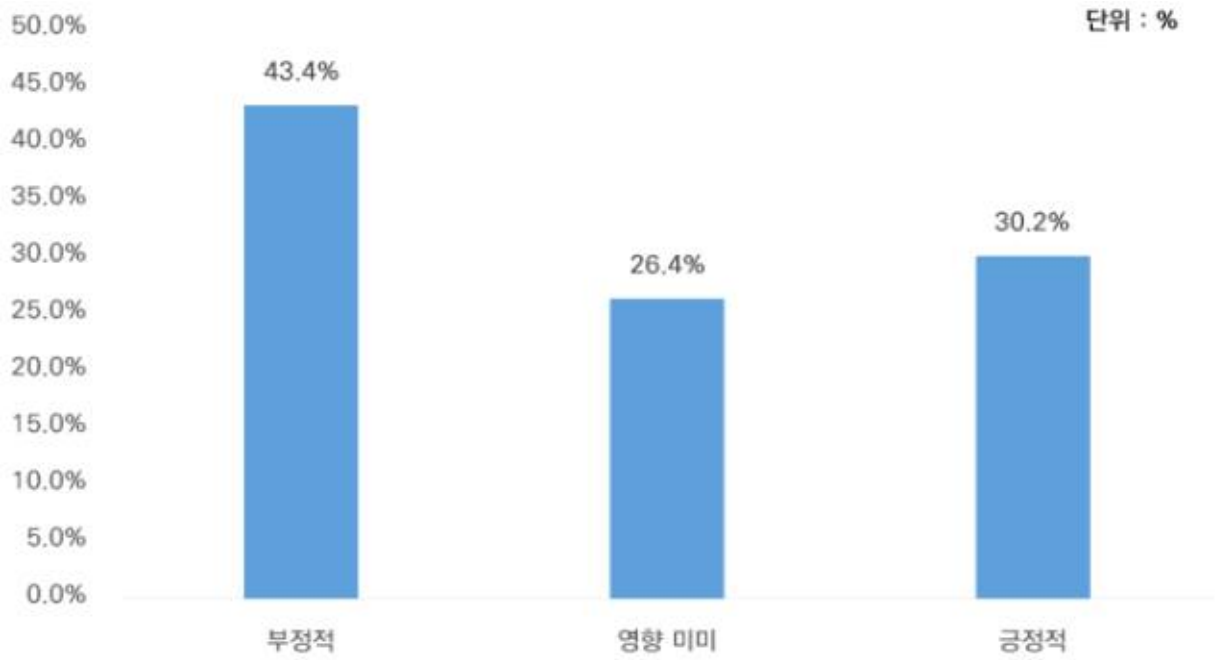

○ 법안의 효과성 관련 43.4%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긍정적 30.2%, 영향 미미가 26.4%로 나타남.

▌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로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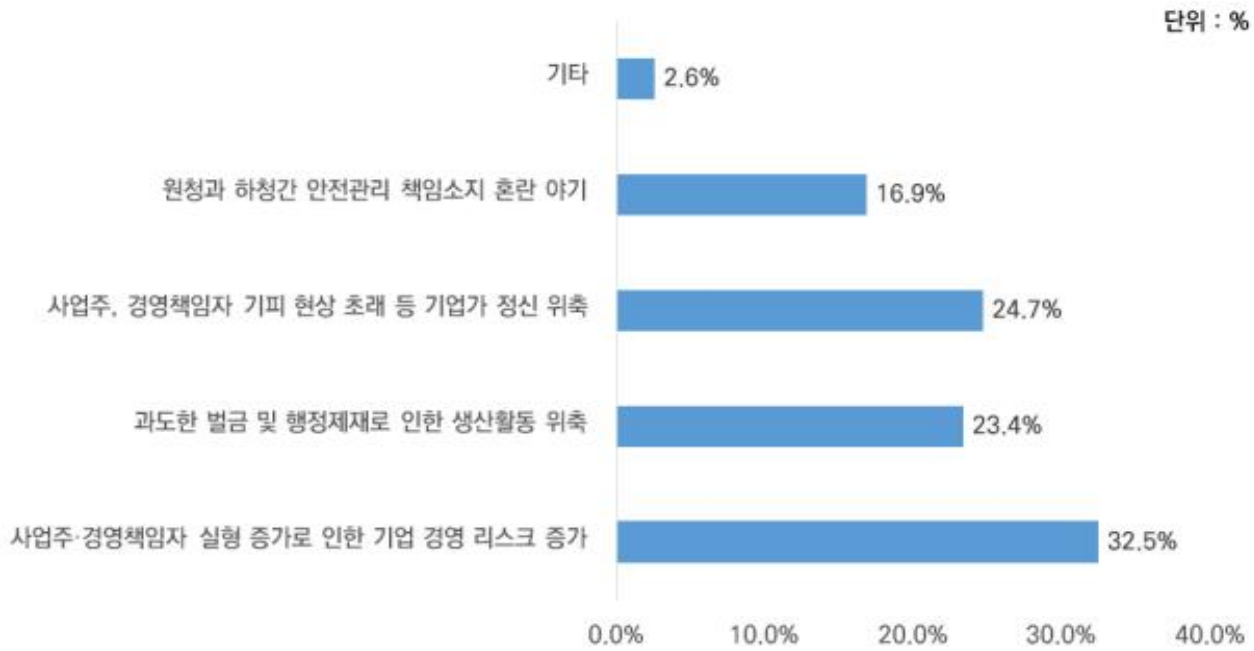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인하여 기업의 주로 애로사항으로 사업주·경영책임자 실형 증가로 인한 기업 경영 리스크 증가가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이어 기업가 정신 위축, 생산활동 위축, 원청과 하청간 안전관리 책임소지 혼란 야기 순으로 응답함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수준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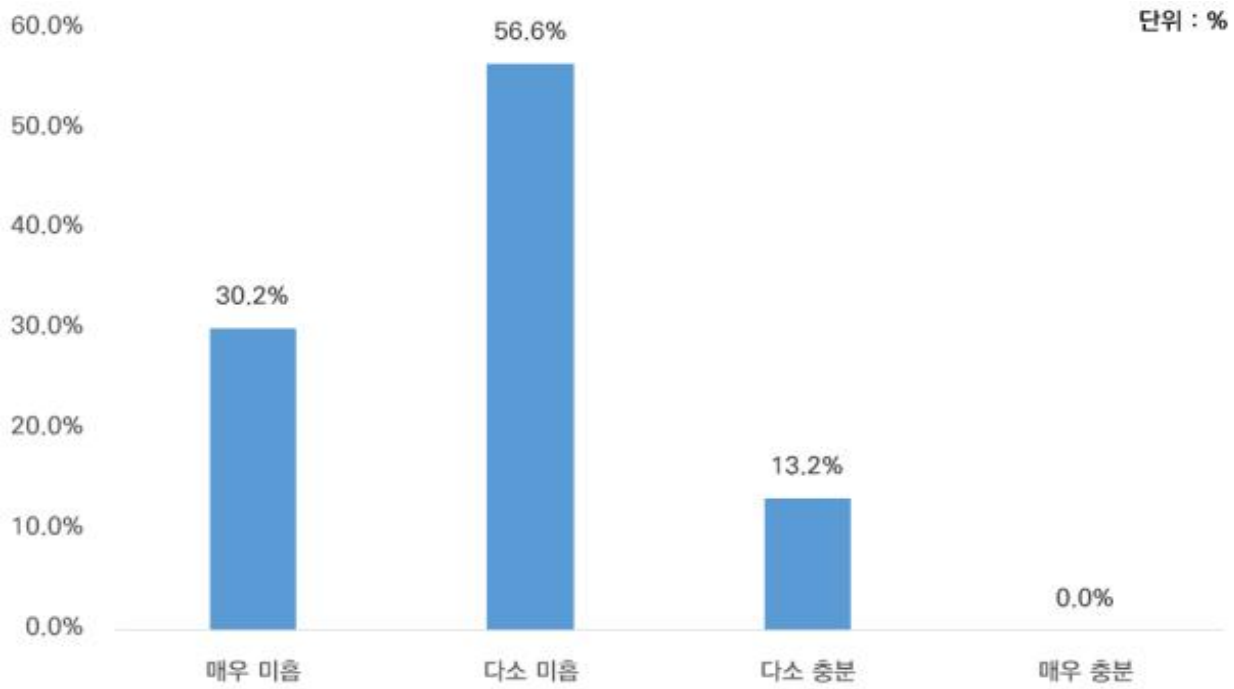

○ 정부의 현재 중대재해를 예방을 위한 정책적 지원 관련해서 미흡하다는 입장이 86.8%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기업의 안전관리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지원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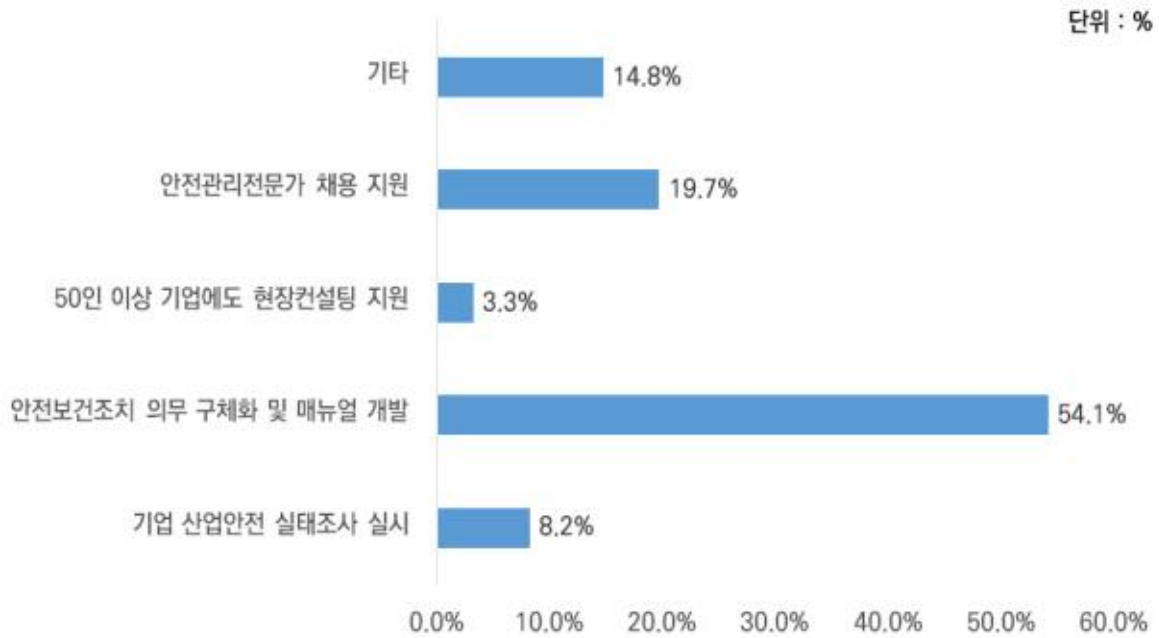

○ 현재 부족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원 과제로 안전보건조치 의무 구체화 및 매뉴얼 개발이 가장 많았으며, 안전관리전문가 채용 지원, 기업 산업안전 실태조사 실시, 50인 이상 기업에도 현장컨설팅 지원, 기타 순으로 응답함.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보완해야 할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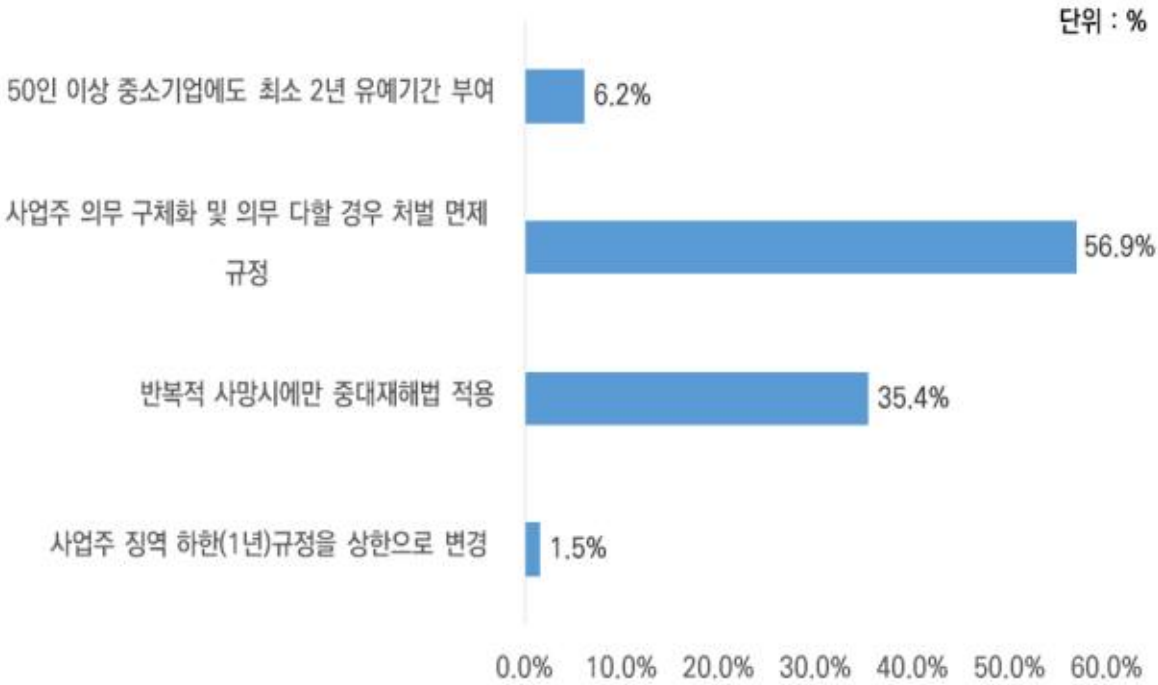

○ 중대재해법관련 규정사항에 대하여 보완해야 할 점으로 사업주 의무 구체화 및 의무 다할 경우 처벌 면제 규정과 반복적 사망시에만 중대재해법 적용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임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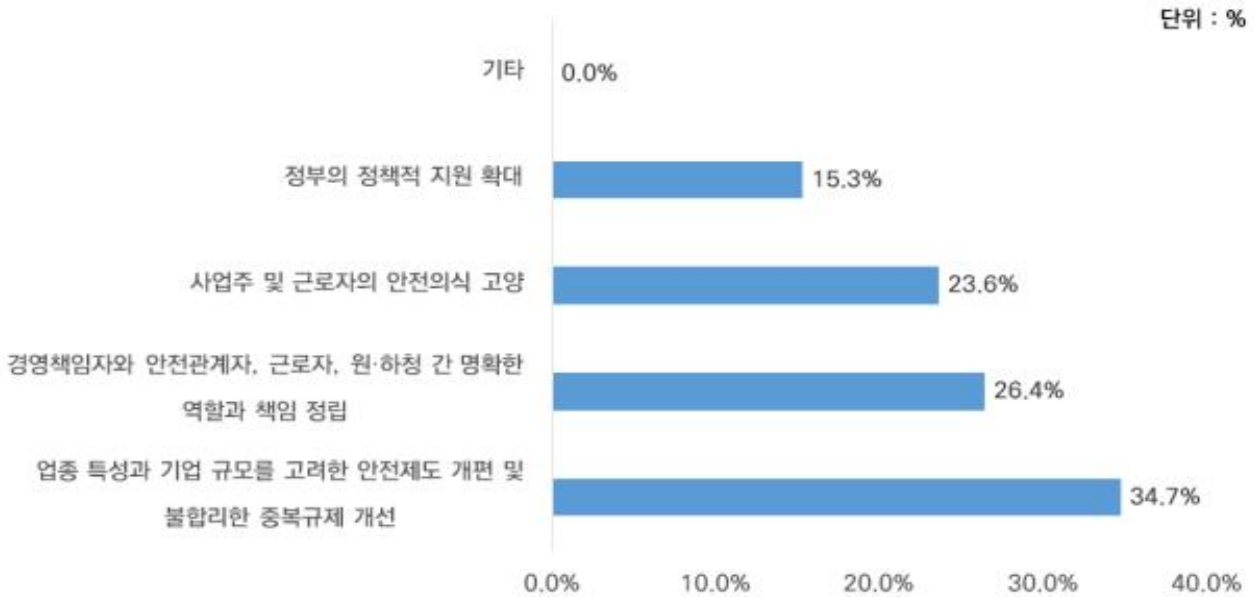

○ 실질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업종 특성과 기업규모를 고려한 안전제도 개편 및 불합리한 중복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Ⅳ 결론

▌요약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위험방지의무를 부과하고, 기업에서 사망사고나 부상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임.

○ 올해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1월 26일 공포됨에 따라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1년 유예를 거쳐 2022년부터 시행,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부터 시행할 예정임.(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 구미지역 제조업체 53개사 중 75.5%는 중대재해법 관련하여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으며, 처벌 수준이 과도하다는 입장은 81.1%이고 처벌 강화로 인하여 중대재해 예방의 효과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이 43.4%, 영향이 미미하다는 입장은 26.4%를 보임.

○ 이번 중대재해법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주요 영향으로 사업주·경영책임자 실형 증가로 기업경영 리스크 증가나 기업가 정신·생산활동 위축, 원청과 하청간 안전관리 책임소지 혼란 야기 등으로 나타남.

○ 현재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수준에 대하여 미흡하다는 입장이 86.8%로 나타났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과제로 '안전보건조치 의무 구체화 및 매뉴얼 개발'(54.1%)을 꼽았고, 이어 '안전관리전문가 채용 지원'(19.7%), '50인 이상 기업에도 현장 컨설팅 지원'(8.3%), '기업 산업안전 실태조사 실시'(8.2%), 기타(14.8%) 순으로 응답함.

○ 중대재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과 관련하여 '사업주 의무 구체화 및 의무 다할 경우 처벌 면제 규정 추가'(56.9%), 이어 '반복적 사망시에만 중대재해법 적용'(35.4%), '50인 이상 중소기업에도 최소 2년 유예기간 부여'(6.2%), '사업주 징역 하한(1년)규정을 상한으로 변경'(1.5%) 순으로 보완해야 할 점을 꼽음.

○ 중대재해를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업종 특성과 기업 규모를 고려한 안전제도 개편 및 불합리한 중복규제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꼽았으며, 이어 '경영책임자와 안전관계자, 근로자, 원·하청 간 명확한 역할과 책임 정립',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양', '정부의 정책적 지원 확대'순으로 나타남.

▌개선과제

○ PSM 공정안전관리 평가에 P등급(우수 : Progressive)나 S등급(양호 : Stagnant)을 받는 등 우수한 등급을 유지하고 평소 사업자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업장에도 일률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기에 의무 규정을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해야하며, 의무를 다할 경우 면책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함.

○ 처벌대상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지,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가 어디까지인지 핵심 내용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고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법을 이해하고 준수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바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최소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거치면서 후속입법이나 하위규정을 보완해야함.

○ 사망자가 1명만 발생하더라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범법자가 되도록 하는 것은 매우 과도한 처벌이므로 일정 기간 내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난 경우에 한해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는 등 개선이 필요함.

○ 중대재해법이 과실법에 대한 법규인 점을 고려해볼 때 산재사고의 직접적 연관성을 가진 자보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경우 간접적인 관리책임을 가졌기에 더 과도한 처벌을 내리는 것은 법리적 모순으로 사료되어 사업주 징역 하한(1년) 규정을 상한규정으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함.

V 조사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 2022년부터 산재나 사고로 노동자가 숨지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할 수 있음.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됨.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처벌대상에서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뒤 시행.

1.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관련 귀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① 찬성 ② 반대

2.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벌수준에 대한 귀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① 매우과도 ② 다소과도 ③ 적정수준 ④ 다소미흡 ⑤ 매우미흡

3. 사업주 등에 대한 처벌 강화가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부정적 ② 다소 부정적 ③ 영향 미미 ④ 다소 긍정적 ⑤ 매우 긍정적

4. 사업주 등 처벌 강화 시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① 사업주·경영책임자 실형 증가로 인한 기업 경영 리스크 증가
② 과도한 벌금 및 행정제재로 인한 생산활동 위축
③ 사업주, 경영책임자 기피 현상 초래 등 기업가 정신 위축
④ 원청과 하청간 안전관리 책임소지 혼선 야기
⑤ 기타

5. 기업의 안전관리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수준은 어떻습니까?
① 매우미흡 ② 다소미흡 ③ 다소충분 ④ 매우충분

6. 기업의 안전관리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제는 무엇입니까?
① 기업 산업안전 실태조사 실시 ② 안전보건조치 의무 구체화 및 매뉴얼 개발
③ 50인 이상 기업에도 현장컨설팅 지원 ④ 안전관리전문가 채용 지원
⑤ 기타( )

7.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보완책은 무엇입니까?
① 사업주 징역 하한(1년)규정을 상한으로 변경
② 반복적 사망시에만 중대재해법 적용
③ 사업주 의무 구체화 및 의무 다할 경우 처벌 면제 규정
④ 50인 이상 중소기업에도 최소 2년 유예기간 부여

8.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은 무엇입니까?
① 업종 특성과 기업 규모를 고려한 안전제도 개편 및 불합리한 중복규제 개선
② 경영책임자와 안전관계자, 근로자, 원·하청 간 명확한 역할과 책임 정립
③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양
④ 정부의 정책적 지원 확대
⑤ 기타